

## 1. 개정이유

소관 예규 성능기반항행(PBN) 운용지침의 유효기간이 2024.5.31.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예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 설정

1) 2027.5.31. 까지 유효기간 설정

\*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없는 행정규칙은 유효기간으로 설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국토교통부예규 제381호

## 성능기반항행(PBN) 운용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일부개정안

「성능기반항행(PBN) 운용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(지침의 유효기간)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성능기반항행(PBN) 운용지침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53조(지침의 유효기간) 이 예규                      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                    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                    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                    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                      여야 하는 <u>2024년 5월 31일</u>까지                     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53조(지침의 유효기간)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 <u>2027년 5월 31일</u>-----                      -----.</p>